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3525 제출연월일: 2024. 9. 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주주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물가·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속세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상속인·수증자 등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할증 평가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8조의2제1항 신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에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비율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 등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매출액 평균금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도록 함.

- 나.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 조정(안 제20조제1항제1호) 물가·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 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26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1억원 이하' 구간을 '2억원 이 하'로 조정하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및 '30억원 초과' 구간 을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통합하며,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 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현행 제63조 제3항 삭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퍼센트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함.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해당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11항제1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1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가업이 같은 목 1) 및 2)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업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의 유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으로서 2025 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개시하는 사업연 도와 이후 4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 춘 기업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것
- 2)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대비 「상법」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 또는 주 식의 소각(「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 각만 해당한다)으로 주주가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주주환원비율"이 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주주환원비율의 100분 의 120 이상일 것
- 나.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이하 이 목에서 "기준과세연도"라 한다)와 이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의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과세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평균 정규직근로자 수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기준과세연도와 이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
 - 1) 기업의 매출액 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각목의 자산에 투자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자산투자

액"이라 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자산투자액의 연평 균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 2) 기업의 매출액 대비 자산투자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고 자산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 3) 기업의 매출액 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연구·인력개발비의연평균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 4)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고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목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 3년 이상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이하 이 목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사와 과밀억제권역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무인력의 근무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목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이전한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그 지정 이후 창업한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1)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할 것

2)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사업장의 상시 근무인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그 기업의 전체 상시근무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공제금액의 한도

- 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
 -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 위
 -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800억원
-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1,200억원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업: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
- ② 제11항을 적용할 때 주주환원비율, 자산투자액의 비율 및 연평균 증가율, 연구·인력개발비의 비율 및 연평균 증가율의 계산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한다. 제26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이하	2선만원 + (2억원들 소파야근 듬액의 100군의 20)
5억원 초과	8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이하	○선인권 + (3억권들 소파야근 급액의 100군의 30)

10억원 초과

2억3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3항 본문 중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3의2.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것

제53조제4호 중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제6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을 "가업"으로 한다.

제8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 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가업상속공제 확대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 조의5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제5조(투자조합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상속세 세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 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 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증여재산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 제8조(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 주식등의 평가에 관하여

는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아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 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 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 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 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되, 해당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제11항제1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 는 기업은 포함한다-----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 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② 제1항 및 제11항-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

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 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 산에 대해서는 <u>제1항</u>에 따른 공 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 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생략)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

<u>제1항 및 제11항</u>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 제2항 및 제11항</u>
,
5
<u>제1항 또는 제11</u>
<u>항</u>

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⑥ ~ ⑩ (생 략) <u><신 설></u>

1. ~ 4. (현행과 같음)
5. 제1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u> 가업이 같은 목 1) 및 2)의 요</u>
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 ⑩ (현행과 같음)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업의 경우에는 제1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
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

1. 가업의 유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 권시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으로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개시하 는 사업연도와 이후 4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것
- 2)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대비 「상 법」 및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 또는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기주식의 소각만 해당한다)으로 주주가 얻은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주주환원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주주환원비율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나. 2025년 1월 1일부터 2025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 는 사업연도(이하 이 목에 서 "기준과세연도"라 한 다)와 이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의 평균 정규직근로자 수 가 기준과세연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 도의 평균 정규직근로자 수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 니한 기업으로서 기준과세 연도와 이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기업

- 산투자액"이라 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자산투자액의 연평균 증 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일 <u>것</u>
- 2) 기업의 매출액 대비 자
 산투자액의 비율이 100분
 의 3 이상이고 자산투자
 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100
 분의 10 이상일 것
- 3) 기업의 매출액 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
 조제1항에 따른 연구・인
 력개발비(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연구・인력
 개발비"라 한다)의 비율
 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
 균 증가율이 100분의 5
- 4)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
 구·인력개발비의 비율
 이 100분의 3 이상이고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
 균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이하 이 목에서 "과밀억 제권역"이라 한다)에 3년 이상 본점 또는 주된 사무 소(이하 이 목에서 "본사" 라 한다)를 두고 사업을 영 위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사와 과밀억제권역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무인력의 근무지를 「조세특례제한 법」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 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이하 이 목에서 "기회발 전특구"라 한다)로 이전한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그 지정 이 후 창업한 기업으로서 다 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 업

-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할 것
- 2)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사업장의 상

지 근무인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그 기업의 전체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2. 공제금액의 한도
 - <u>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u> 해당하는 기업
 -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경우: 600억원
 -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경우: 800억원
 -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계속하여 경영한 경우:1,200억원
 - <u>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u> <u>업: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u> <u>액</u>
- ② 제11항을 적용할 때 주주환원비율, 자산투자액의 비율 및연평균 증가율,연구·인력개발비의 비율 및연평균 증가율의계산방법,그밖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 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 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 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 다.

-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 2. ~ 4. (생 략)
- ②・③ (생 략)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 조 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 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5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u>은 대</u>	통령령의	으로 정	한다.	<u>-</u>
제20조(그	그 밖의	인적공	7제) (1
	·			
1				
	<u>5</u> 억	원		
2. ~	4. (현형	생과 같	음)	
2.3) (현행	과 같음	<u>)</u>	
제26조(건	상속세	세율)		
과세표	<u> </u>	세	Ę	<u> </u>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
5억원 이하	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
30억원 이하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00101 = =1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30억원 초과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8천만원 + (5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2억3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일부개정법률 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② (생 략)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01조제1항</u>

④ (현행과 같음)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 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 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 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 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③ (생 략)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저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법인세법」 제52조제1</u>
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
당하는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
여하는 것
4 <u>제3호까</u>
지 및 제3호의2
②・③ (현행과 같음)
∥53조(증여재산 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 3. (생략)
-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② (생략)
-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 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 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 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1. ~ 3. (현행과 같음)
4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세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 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도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 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 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 1. 상속인이 <u>제18조의2제1항</u>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
세의 납부유예) ①
1 <u>가업</u>

한다)을 상속받았을 것

- 2. (생략)
- ② ~ ⑧ (생 략)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⑦ (생 략)

<신 설>

- 2.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⑦ (현행과 같음)
- ⑧ 투자를 목적으로「민법」 제 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 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 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 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O 수입 : △186,459억원

(단위: 억원)

구 분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의 의전) 연평균
			해	당	없	음		
지출	소 계(A)	-	-	_	-	_	-	-
	○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 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 18의2)		추	정	고	란		
	○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 (§20)	△8,624	△17,247	△17,247	△17,247	△17,247	△77,612	△15,522
수입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26)	△15,575	△23,318	△23,318	△23,318	△23,318	△108,847	△21,769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중여의제 범위에 지본가래 추가 (§45의5)		추	정	고	란		
	○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53)		추	정	곤	란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63)		추	정	곤	란		
	소 계(B)	△24,199	△40,565	△40,565	△40,565	△40,565	△186,459	△37,291
총비	용(A-B)	24,199	40,565	40,565	40,565	40,565	186,459	37,291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18조의2	주주환원 및 투자 또는 R&D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1	(가업상속공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폐지함에 따라 세수 감소
2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세수 감소
3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1억원 이하 구간을 2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30억원 초과 구간을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통합하여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세수 감소
4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함에 따라 세수 증가
5	제53조 (중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는 기타 친족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정비함에 따라 세수 증가
6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20% 할증평가하는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세수 감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개정규정 적용대상인 밸류업·스케일업
1	제18조의2	×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기회발전특구
1	(가업상속공제)	^	이전·창업기업의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2	제20조	0	
	(그 밖의 인적공제)		_
2	제26조		
3	(상속세 세율)	Ó	_
4	제45조의5	×	개정규정 적용대상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5촌・6촌 혈족 또는 4촌 인적으로부터	
	-레 도 9 -코		증여를 받으며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5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받은 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개정규정	
	(중역재산 중제 <i>)</i> 		적용대상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C	제63조	.,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받은 인원과	
6	(유가증권 등의 평가)	×	규모에 대한 자료가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개정 법률안이 '24.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 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①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확대(§ 18의2)

- ㅇ 세수감: 추정곤란
 - 밸류업·스케일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의 규모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②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20)
 - ㅇ 세수감: △77,612억원
 - '21년~' 23년 상속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연도별 세수감 규모를 평균
 - 자녀가 0명인 자 등 (기초공제+인적공제)금액이 5억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수효과 없음
 - 현행 제도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보다 자녀공제 확대금액이 큰 자의 경우 현행 결정세액 전액을 세수감으로 추정하였으며, 그 규모는 연간 6,342억원
 - 현행 제도에 따라 산출한 과세표준보다 자녀공제 확대금액이 작은 자의 경우 공제 확대액과 평균실효세율을 곱하여 세수감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그 규모는 연간 10,905억원
 - 1월~6월 상속개시분은 해당 연도에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므로 당해연도에 세수효과가 발생하지만, 7월~12월 상속개시분은 차년도에 세수효과 발생하므로 '25년 세수감은 17,247억원이 아니라 8,624억원

③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26)

- ㅇ 세수감: △108,847억원
 - '21년~ '23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통계에 개정안을 대입하여 산출한 총결정세액

과 현행 제도에 따른 총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개정에 따른 세수감 추정

- 개정안 총결정세액 계산식 =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세액공제+가산세]
- ' 21년~ '23년 상증세 결정세액 합계의 평균은 201,846억원
- 개정안에 따른 총결정세액은 178.528억원으로 추정
- 추정 세수감 규모는 연간 23,318억원(상속세 △7,656억원, 증여세 △15,662억원)
- 1월~6월 상속개시분과 1월~9월 증여분은 은 해당 연도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므로 당해연도에 세수효과가 발생하지만, 7월~12월 상속개시분, 10월~12월 증여분은 차년도에 세수효과 발생하므로 '25년 세수감은 15,575억원
- ④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중여의제 범위에 자본거래 추가(§ 45의5)
 - ㅇ 세수감: 추정곤란
 - 개정규정 적용대상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 ⑤ 중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53)
 - ㅇ 세수감: 추정곤란
 - 5촌·6촌 혈족 또는 4촌 인적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며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개정규정 적용대상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추계 곤란
- ⑥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63)
 - ㅇ 세수감: 추정곤란
 -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받은 인원과 규모에 대한 자료가 없음

Ⅳ. 부대의견

O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전해일	이원준	박지훈	이용주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해일	044-215-4316	haeilj@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O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회계·기금 간 전입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기타						
〈합 계〉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O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 중앙정부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 ○○기금						
□ 지방자치단체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 ○○기금						
□ 기타						
Ó						
〈합 계〉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O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Ⅳ. 부대의견

O 해당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혐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Ⅵ.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국장
전해일	이원준	박지훈	이용주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해일	044-215-4316	haeilj@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